



진주교 서울대교구
구로3동 성당
주보성인 : 프란치스코 살레시오

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.guro3cc.com
☎ 사무실 857-8541 팩스 857-8549

미사시간	주일	토요일 주일 : 19:00	
		06:30 (새벽)	10:30 (교중)
		12:00 (중·고등부)	15:00 (유·초등부)
	18:00 (청년)	21:00 (밤)	
평일	06:30 (새벽), 19:00 (저녁), 목요일 10:00		
예비자 교리	일요일 오전 09시 / 화요일 저녁 8시		
유아세례	토요일 오전 11시 (사무실 문의)		
연령회 회장	김인기 베드로 010-5311-7604/869-5965		

모임

단체명	일시	장소
울뜨레야	4월 19일(일) 11:40	강당
성체분배자회	4월 27일(월) 19:40	성체조배실
자녀를 위한 기도	5월 1일(금) 19:40	1교실
성모성심회	5월 2일(토) 17:30	강당

알림

- 4월 24일(금) 저녁미사후 성시간 및 성체강복이 있습니다.
- 4월 26일(일)은 성소주일로서 2차헌금이 있습니다.
- 4월 26일(일) 15:00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.

다음 주일(4/26) 청소 담당 : 7구역

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

- 일시 : 5월 2일(토) 오전 6:30

서서울지역 여성 구역봉사자 교육

- 대상 : 여성 구역봉사자
- 일시 : 4월 21일(화) 10:30~16:00
- 장소 : 신도림동 성당
- 강사 : 홍웅기 신부님
- 파견미사 :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
- 준비물 : 필기구, 미사 준비
- 접수 및 문의 : 성당사무실, 여성 총구역장

통기타 동아리 회원 모집

- 4월 24일 개강확정
- 일시 : 매주 금 저녁 7시30분
- 장소 : 문화관 1교실
- 모집인원 : 5명
- 회비 : 월 3만원
- 신청 및 문의-최선영 마리아(010-7768-4888)
- *탁구, 색소폰 개설예정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*

가톨릭 스테이지 안내

구로3동 성당 & 가톨릭 스튜디오와 함께하는
가톨릭 스테이지 (Catholic Stage)

온전한 하루 피정

“부활의 기쁨, 찬양의 은총”

- 2026년 5월 9일(토) 10:00~16:00 대성전
- 1부 강의 : 조남구 마르코 신부
(수원교구 공도 성당 주임)
- 2부 음악 피정 : 디이에스 워십 (Des Worship)
찬양팀
- 3부 음악 피정 : 이창민 마르치아노 신부
파견미사 : 이창민 마르치아노 신부
- 준비물 : 미사도구(미사예물, 봉헌금)
김밥판매(중식)
- 문의: 성당사무실

우리들의 정성(4월 8일 ~ 4월 14일)

교무금		5,206,000원
주일헌금	현금	5,227,000원
	신자앱	49,000원
감사헌금	서만심 6만원 김성기10만원 최순흥10만원 함민석10만원	

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

월일	해설	복사	독서
4/19	임종남	장희석	이치현 정재호 민옥경
4/26	이영민	도현만	박성진 윤상기 구민서

성체 분배자 명단

월일	토요주일	06:30	10:30
4/19	박용환	김영균	조홍환 도현만
4/26	옥윤필	김용진	최웅조 박용환

성가번호 ♪ 입당 : 130 ♪ 예물준비 : 216, 217 ♪ 영성체 : 166, 151 ♪ 파견 : 131



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29-05-001894 예금주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
(※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.)

제 3 편 사 목

제 1 장 교 구

제 1 절 행정부

제 2 관 평의회

제 147 조 (사목평의회)

1항 교구마다 필요하다면 사목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는 사목평의회를 구성한다(교회법제 511-514조;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, 35항 참조).

2항 사목평의회는 성직자와 수도자 및 평신도 중에서 교구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위촉된 신자들로 구성된다(교회법 제512조 1항;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, 42항 참조).

제 148 조 (각종 위원회)

교구는 필요에 따라 여러 위원회들을 둘 수 있다(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, 38항 참조).

제 2 절 사법부

제 1 관 법 원

제 149 조 (교구법원)

1항 교구마다 제1심 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(교회법 제1419-1421조;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, 31항 참조).

2항 교구법원을 단독으로 설립할 수 없는 교구의 제1심은 사도좌 대심원의 승인을 받아 이웃 교구법원에 의뢰한다(교회법 제1423조 참조).

제 150 조 (제2심 법원)

관구는 제2심 법원을 따로 구성하여 그 관구 관하 모든 제1심 법원들의 제2심을 담당한다(교회법 제 1438조 참조).

제 151 조 (혼인무효 소송)

한국교회에서는 혼인무효 소송의 제1심은 성직자 단독 재판관이 심리할 수 있다(교회법 제1425조 4항 참조; 1987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 결정).

<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참조>